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08 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 민형배·강유정·손명수

조승래 · 조계원 · 이성윤

염태영 · 이해민 · 황정아

한준호 · 모경종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'지방'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.

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,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'특별지방행정기관'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'지방'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, 행정기관 명칭에서 '지방'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.

이에 '특별지방행정기관'을 '특별지역행정기관'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자 합니다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지역행정기관"으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7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80조제2항제2호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6호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편제2장제3절의 제목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 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④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제14호나목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7호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중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각각 "특별지역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특별지방행정기관"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"특별지역행정기관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<u>특별지방행정기관</u> 의 설치)	제3조(<u>특별지역행정기관</u> 의 설치)
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	①
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	
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	
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<u>지방행정기관</u> 을	<u>지역행정기관</u>
둘 수 있다.	·.
② 제1항의 <u>지방행정기관</u> 은 업	② <u>지역행정기관</u>
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	
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	
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	
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	
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	
여 수행할 수 있다.	